

개호보험제도

고령자가 존엄을 유지하면서 그가 지닌 능력에 따라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지향합니다.

2024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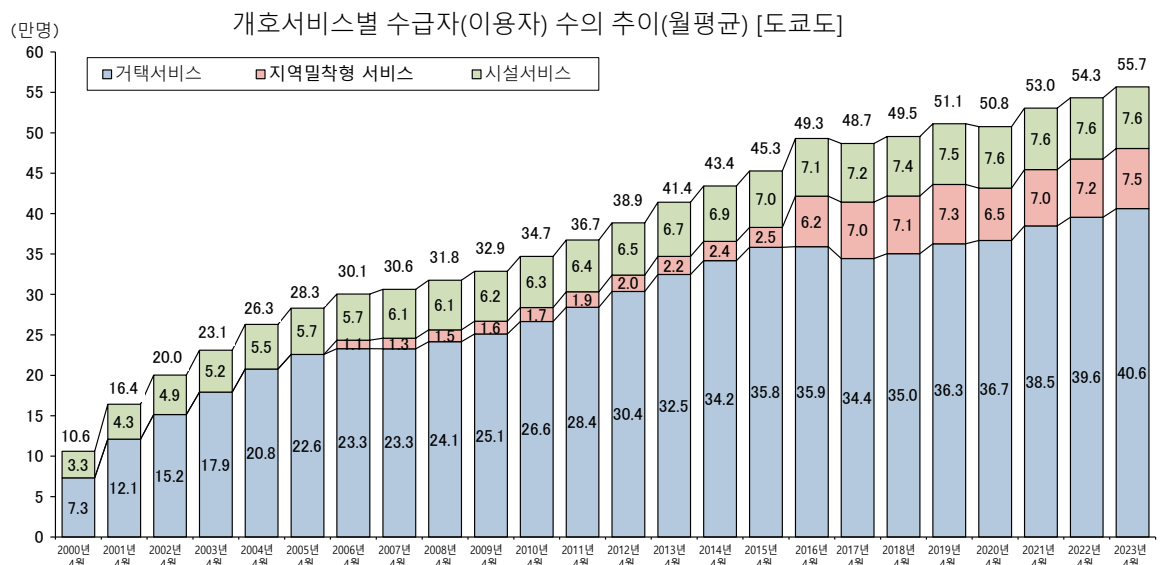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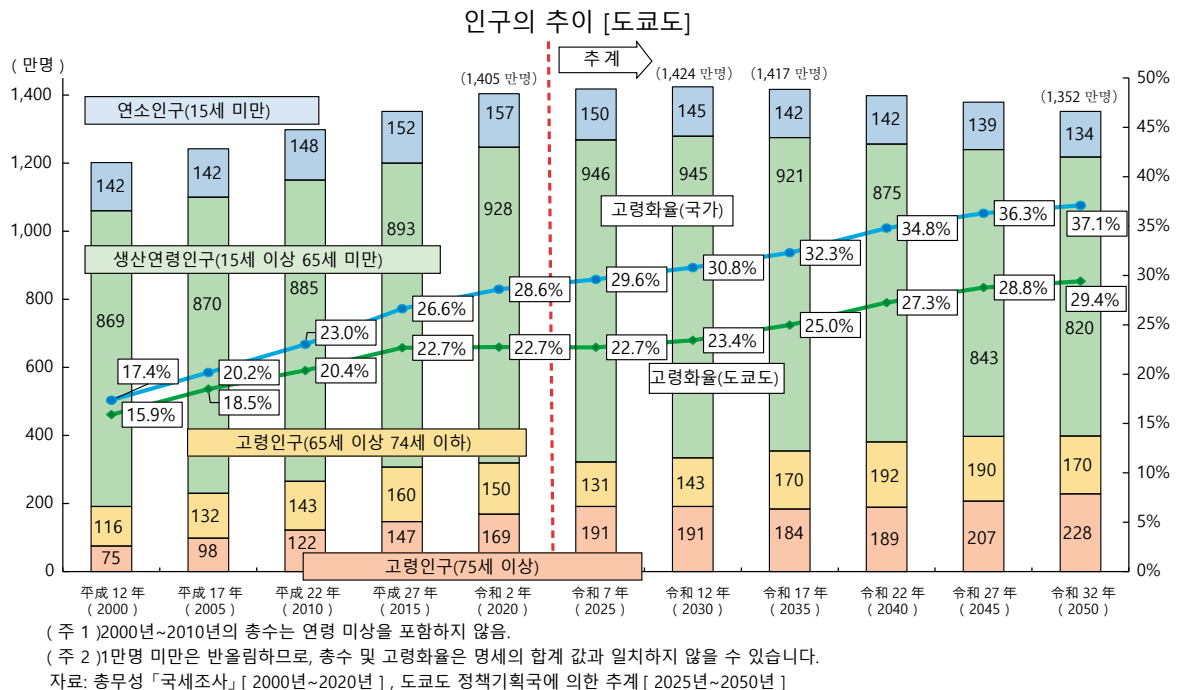
4 월



도쿄도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 도쿄도의 고령자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향후 4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개호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개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사회 전체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재택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정착해 왔습니다.
- 개호보험제도는 나이가 들에 따라 발생하는 질환 등으로 개호가 필요하게 된 상태일지라도, 존엄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 제도의 운용 주체(보험자)는 주민에게 가까운 구시정촌입니다. 국가·도쿄도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1
■ 목차	2
■ 개호보험법 개정의 포인트	3
■ 개호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흐름	4
■ 서비스 이용의 절차	5
■ 보험료	7
■ 개호서비스의 이용자 부담	10
■ 이용자 부담 경감제도	11
■ 개호서비스 선택 시 유의사항	12
■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13
▶ 케어플랜 작성	13
▶ 가정에서 받는 서비스	13
▶ 시설 등에 가서 받는 서비스	15
▶ 시설 등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	17
▶ 기타 서비스	20
■ 지역지원사업	21
■ 상담 창구	23

개호보험제도 개정의 포인트 <2024년도>

2024년 4월부터

- 65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 단계를 판정하는 기준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표준 보험료 단계가 13 단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 1 단계부터 제 3 단계에 대해서는 기준액에 곱하는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8 페이지 참조).
- 일부 복지용구에 대해 대여 및 판매 선택제가 도입됩니다.
복지용구는 대여를 통한 이용이 원칙입니다만, 「고정용 슬로프」, 「보행기(보행차 제외)」, 「단발 지팡이(목발 제외)」, 「다발 지팡이」에 대해서는 구매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 페이지 참조).
- 개호예방지원의 지정을 받은 거택개호지원사업자도 개호예방 케어플랜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개호예방 케어플랜의 작성은 지금까지의 지역포괄지원센터 외에 구시정촌으로부터 개호예방지원의 지정을 받은 거택개호지원사업소에도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6·13 페이지 참조).

2025년 8월부터

- 개호노인보건시설·개호의료원의 다인실에 새롭게 대실료 부담이 도입됩니다.
지금까지 대실료 부담이 없었던 일부 개호노인보건시설·개호의료원의 다인실*에 새롭게 월액 8천엔 상당의 대실료 부담이 도입됩니다.
* 기타형·요양형 개호노인보건시설, II형 개호의료원 중 거실 면적이 8㎡ 당 1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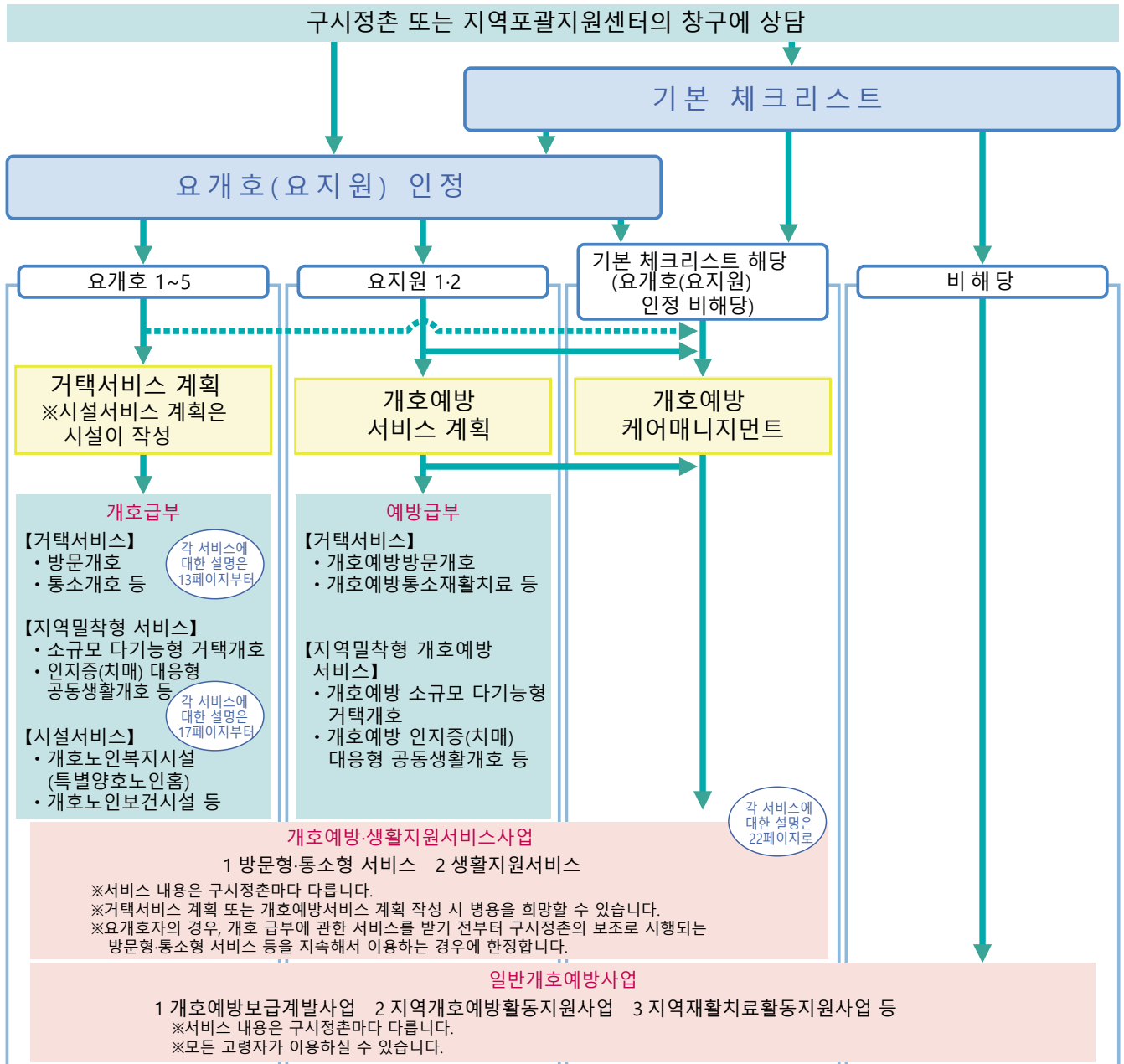
개호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흐름

가입자(피보험인)

※외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 3개월 이상 체재하는 분, 특별영주자인 분 등은 포함됩니다.

【제1호 피보험자】 65세 이상인 분

【제2호 피보험자】 40세부터 64세까지의 분으로서 의료보험 가입자(※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 참조)



※위 그림은 일반적인 개호보험 이용 절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구시정촌에 문의하십시오.

서비스 이용 절차

-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각 구시정촌에 요개호 (요지원) 인정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은 후, 개호지원전문원 (케어매니저) 등과 상담하여 작성하는 케어플랜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또, 개호예방·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의 경우, 구시정촌의 상담창구에서 기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방문형 서비스·통소형 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구시정촌에 신청합니다.

【65 세 이상인 분】

→개호가 필요하게 된 원인과 관계없이 급부대상이 됩니다.

【40 ~ 64 세로 의료보험 가입자】

→아래에 예를 든 특정 질병이 원인으로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급부대상이 됩니다.



①암 (말기) ②류마티스관절염 ③근위축성측색경화증 ④후종인대골화증 ⑤골절을 동반하는 골다공증 ⑥초로기 인지증 (치매)
⑦진행성 핵상성 마비, 대뇌피질기저핵 변성증 및 파킨슨병 ⑧척수소뇌변성증 ⑨척주관협착증 ⑩조로증 ⑪다계통 위축증 ⑫당뇨병성 신경장애, 당뇨병성 신증 및 당뇨병 망막증 ⑬뇌혈관질환 ⑭폐색성 동맥경화증 ⑮만성 폐색성 폐질환 ⑯양측 무릎관절 또는 고관절에 현저한 변형을 동반하는 변형성 관절증

2 요개호 (요지원) 인정

- 개호나 지원의 필요 정도를 판정합니다.

① 방문조사

신청 후에 인정조사원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심신의 상태와 일상생활의 상황 등에 대한 청취조사를 시행합니다.

② 1 차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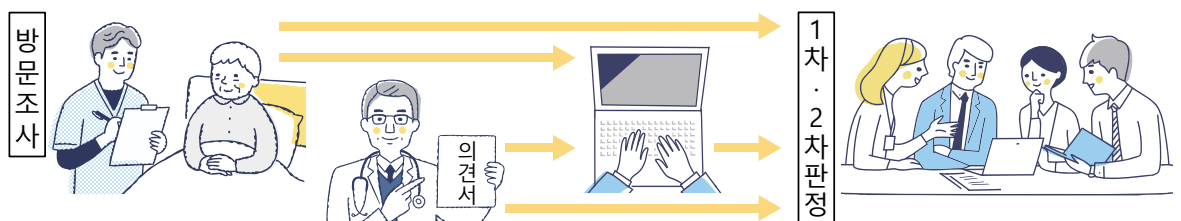
방문조사 결과와 주치의 의견서의 내용 일부를 컴퓨터로 처리하여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복지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호인정심사회가 1 차 판정을 확정합니다.

③ 2 차 판정

1 차 판정 결과와 주치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개호인정심사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 차 판정을 시행합니다.

④ 결과 통지

2 차 판정 결과에 따라 구시정촌이 요개호 (요지원) 인정 구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3 케어플랜 작성

-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개호지원전문원(케어매니저)과 함께 필요성에 따라 서비스를 조합한 케어플랜을 작성합니다.

【요개호 1~5로 인정받은 분】

케어플랜은 거택개호지원사업소의 케어매니저에게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요지원 1·2로 인정받은 분】

케어플랜은 지역포괄지원센터(※ 21 페이지 참조) 외에 구시정촌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거택개호지원사업소에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요개호(요지원) 인정 구분에 따라 개호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비용의 상한(지급한도기준액 ※ 10 페이지 참조)이 다릅니다.
-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는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에 신청하고 입소한 시설에서 케어플랜을 작성합니다.



4 서비스 이용

- 케어플랜을 바탕으로 서비스제공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계약 시에는 서비스 시간, 요금, 내용, 해지처리, 고충처리에 대한 대응 등을 확인합니다.
- 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10%(일정 이상 소득자의 경우는 20% 또는 30%)는 이용자 부담이 됩니다. 단, 지급한도기준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부분은 전액 이용자 부담이 됩니다(※서비스 이용 시의 이용자 부담에 대해서는 10 페이지 참조).
- 요개호(요지원) 인정에서 비해당 판정을 받으신 분도, 지역지원사업에서 생활기능의 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상담해 주십시오.

서비스의 이용을 목표로 하지 말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그다운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험료

1 65 세 이상인 분 (제 1 호 피보험자) 의 보험료

65 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는 3 년마다 각 구시정촌이 정하는 기본액에 소득 단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그 금액은 시구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개호보험료의 표준적인 단계 설정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만, 본인의 보험료액에 대해서는 거주지 구시정촌의 개호보험담당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보험료의 납부방법】

개호보험료의 납부방법에는 연금에서 자동으로 징수되는 「특별징수」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는 「보통징수」가 있습니다. 특별징수는 노령·퇴직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연액 18 만엔 이상 수급하고 있는 분이 대상이며, 연금 정기지급 (연 6 회) 시에 보험료가 차감됩니다. 보통징수의 지급 시기와 횟수는 구시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2 40 ~ 64 세인 분 (제 2 호 피보험자) 의 보험료

40 ~ 64 세인 분의 보험료는 별도로 책정되어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의 보험료 일부로서 징수됩니다. 보험료액 등은 의료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개호보험은 개호나 지원을 해야 하는 고령자 등을 상호부조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분에게는 서비스 이용 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①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 지급방법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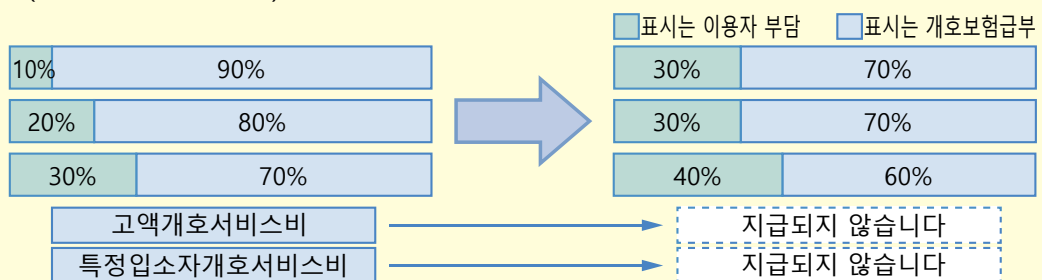
자기부담분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 전액을 일단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후일, 신청에 따라 보험급부 분이 환급됩니다.

② 1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 보험급부의 일시정지

보험급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일시적으로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부비를 체납보험료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 급부액의 감액

보험료는 2 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시효가 되는데, 서비스 이용 시에 시효가 된 미납 보험료가 있으면, 일정 기간 본래 10% 또는 20% 의 이용자 부담인 분은 30%(30% 의 이용자 부담인 분은 40%) 가 되고, 고액개호서비스비 (※) 및 특정입소자개호서비스비 (※) 등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 11 페이지 참조).



소득 단계	대상자	보험료액
제 1 단계 ※1	· 세대 전원이 구시정촌민세 비과세로, 생활보호수급자 또는 노령복지연금수급자 · 세대 전원이 구시정촌민세 비과세로, 전년의 소득금액 (※ 2) 에서 연금수입에 관련되는 소득 (※ 3) 을 공제한 금액과 과세연금수입의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분	기준액× 0.455 (0.285) ※ 1
제 2 단계 ※1	· 세대 전원이 구시정촌민세 비과세로, 전년의 합계소득금액 (※ 2) 에서 연금수입에 관련되는 소득 (※ 3) 을 공제한 금액과 과세연금수입의 합계가 80 만엔 초과 ·120 만엔 이하인 분	기준액× 0.685 (0.485) ※ 1
제 3 단계 ※1	· 세대 전원이 구시정촌민세 비과세로, 제 1 단계와 제 2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분	기준액× 0.69 (0.685) ※ 1
제 4 단계	· 본인은 구시정촌민세 비과세이지만 세대 중에 과세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분으로, 전년의 합계소득금액 (※ 2) 에서 연금수입에 관련되는 소득 (※ 3) 을 공제한 금액과 과세연금수입의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분	기준액× 0.9
제 5 단계	· 본인은 구시정촌민세 비과세이지만 세대 중에 과세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분으로, 제 4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분	기준액
제 6 단계	· 본인에게 구시정촌민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전년의 합계소득금액 (※ 2) 이 120 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 1.2
제 7 단계	· 본인에게 구시정촌민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전년의 합계소득금액 (※ 2) 이 120 만엔 이상 210 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 1.3
제 8 단계	· 본인에게 구시정촌민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전년의 합계소득금액 (※ 2) 이 210 만엔 이상 320 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 1.5
제 9 단계	· 본인에게 구시정촌민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전년도 합계소득금액 (※ 2) 이 320 만엔 이상 420 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 1.7
제 10 단계	· 본인에게 구시정촌민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전년도 합계소득금액 (※ 2) 이 420 만엔 이상 520 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 1.9
제 11 단계	· 본인에게 구시정촌민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전년도 합계소득금액 (※ 2) 이 520 만엔 이상 620 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 2.1
제 12 단계	· 본인에게 구시정촌민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전년도 합계소득금액 (※ 2) 이 620 만엔 이상 720 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 2.3
제 13 단계	· 본인에게 구시정촌민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전년도 합계소득금액 (※ 2) 이 720 만엔 이상인 분	기준액× 2.4

※1 저소득자인 분에게는 개호보험법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표 가운데 () 내의 부담 비율은 최대한으로 경감한 경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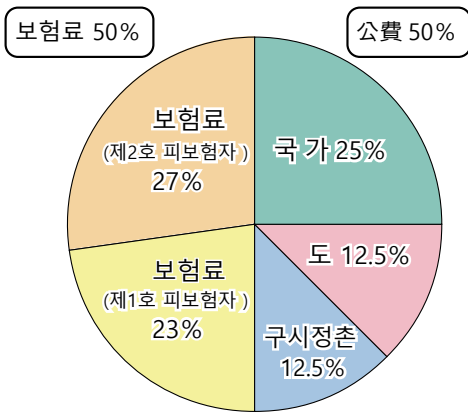
※2 (1) 합계소득금액이란, 수입에서 공적연금공제와 급여소득공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 구시정촌민세 본인 비과세로 합계소득금액에 급여소득을 포함하는 경우, 급여소득은 급여수입에서 급여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급여소득과 연금수입 관련 소득이 있는 분의 소득금액조정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공제 전의 금액) 에서 10 만엔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해당 금액이 0 미만이면 0).

(2) 조세특별조치법에 규정되는 장기·단기 양도소득 관련 특별공제액 (아래의 (가)~(아)) 이 있는 경우는, 합계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 (가) 수용·교환 등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5,000 만엔 (최대)
- (나) 특정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재해지의 방재집단지원촉진사업 등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2,000 만엔 (최대)
- (다) 특정주택지조성사업 등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1,500 만엔 (최대)
- (라) 농지 보유의 합리화 등을 위해 농지 등을 매각한 경우의 800 만엔 (최대)
- (마) 거주용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3,000 만엔 (최대)
- (바) 특정토지 (2009 년 및 2010 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 소유기간이 5 년을 초과한 것) 를 양도한 경우의 1,000 만엔 (최대)
- (사) 저미이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100 만엔 (최대)
- (아) 위의 (가)~(사) 중에서 2 개 이상의 적용을 받는 경우의 최고한도액 5,000 만엔 (최대)

※3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에서 공적연금 등 공제액을 공제한 잔액 (해당 금액이 0 미만이면 0)

3 개호보험의 자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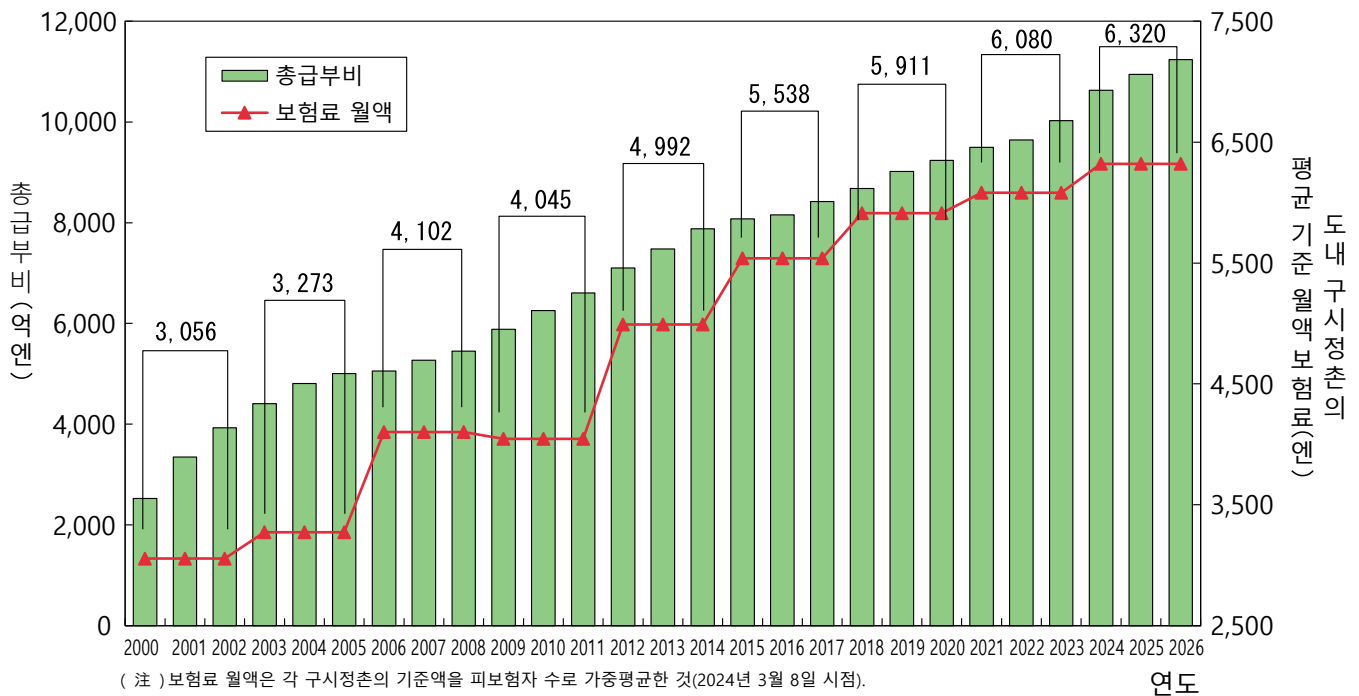


※왼쪽 그래프는 방문개호 등 재택계 서비스의 재원을 나타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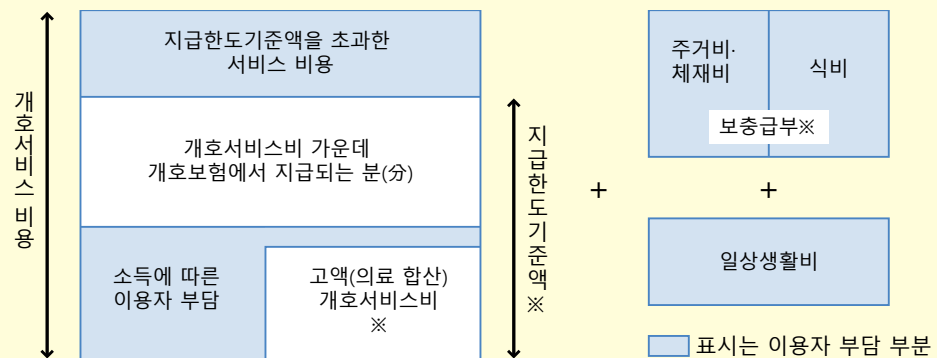
개호보험시설·특정시설의 급부비는 국가 20%, 도 17.5%입니다.

※국가 부담분 중 5%는 조정교부금으로서 피보험자의 상황에 따라 배분되므로 구시정촌별 교부율이 달라집니다.

4 개호보험급부의 증가와 보험료의 추이



●이용자의 자기부담과 급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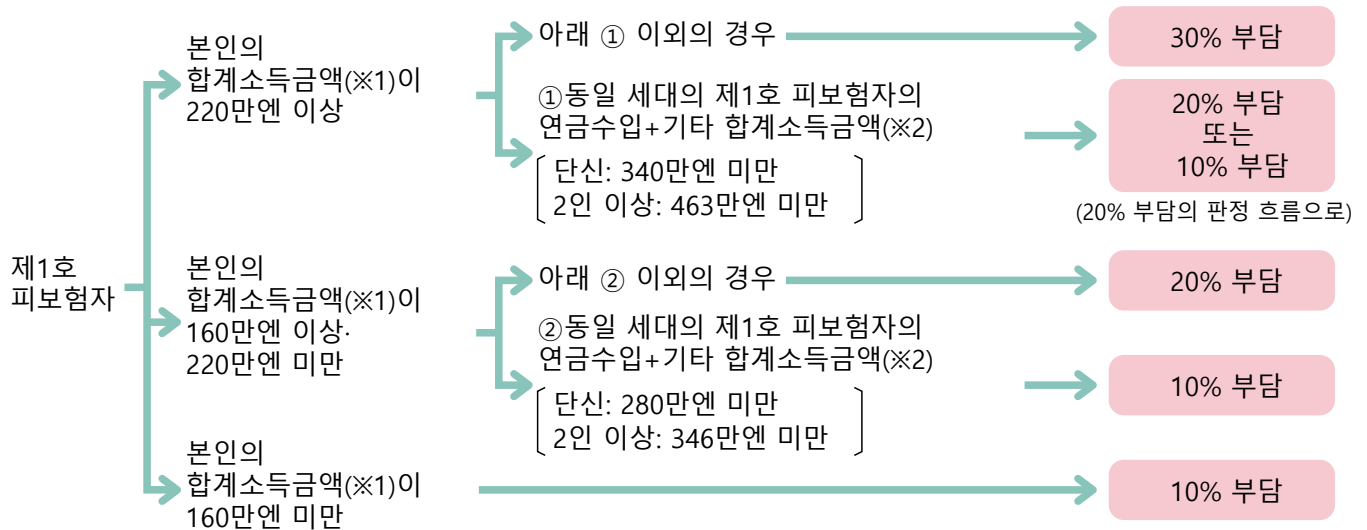


※ 지급한도기준액·고액(의료 합산)개호서비스비·보충급부에 대해서는 10-11페이지 참조.

※ 일상생활비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일상생활상의 편의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통상 필요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예: 이미용비, 교양오락비 등).

개호서비스의 이용자 부담

-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득 등에 따라 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90%~70%가 개호보험에서 지급되며, 나머지 10%~30%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
단, 거택개호지원, 개호예방지원에는 이용자 부담이 없습니다.



※ 1: 합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8 페이지 ※ 2 (1) (2) 참조.

※ 2: 기타 합계소득금액이란, 합계소득금액에서 연금수입에 관련되는 소득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에서 공적연금 등 공제액을 공제한 잔액) 을 공제한 금액.

※ 3: 제 2 호 피보험자, 주민세 비과세인 분, 생활보호수급자는 위와 관계없이 10% 부담.

재택서비스를 받는 경우의 지급한도기준액

- 재택서비스의 경우 요개호도별로 개호보험에서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상한 (지급한도기준액) 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른쪽 표 참조).

주: 실제의 상한 (지급한도기준액) 은 단위 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단위당 단가는 지역이나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 오른쪽 표에서는 기준으로서 1 단위당 10 엔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상한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상한 초과분 전액이 자기부담이 됩니다.

요개호도	보험에서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 (1 개월당·기준)
요지원 1	50,320 엔
요지원 2	105,310 엔
요개호 1	167,650 엔
요개호 2	197,050 엔
요개호 3	270,480 엔
요개호 4	309,380 엔
요개호 5	362,170 엔

이용자 부담액 경감제도

개호서비스 등의 이용자 부담에는 아래와 같은 경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액 (의료합산) 개호서비스비

- 1개월간의 개호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액의 합계가 일정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이 급부됩니다 (아래 표 참조). 또, 1년간의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이용자 부담액※의 합계가 현저하게 고액이 된 경우, 일정 금액이 「고액의료합산개호서비스비」로써 급부됩니다.

※복지용구 구입비, 주택 개보수비, 식비, 주거비 등 일부 제외.

이용자 부담 단계 구분	상한액
• 연 수입 약 1,160 만엔 이상	(세대) 140,100 엔
• 연 수입 약 770 만엔 이상 약 1,160 만엔 미만	(세대) 93,000 엔
• 연 수입 약 383 만엔 이상 약 770 만엔 미만	(세대) 44,400 엔
• 일반 (구시정촌민세 세대 과세자)	(세대) 44,400 엔
• 구시정촌민세 세대 비과세자 등	(세대) 24,600 엔
①과세연금 등 수입과 소득금액의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분	(개인) 15,000 엔
②노령복지연금수급자	
• 생활보호수급자 등	(개인) 15,000 엔

※과세소득이 145 만엔 이상인 분 (단, 세대 내의 수입에 따라 신청에 의해 일반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비·거주비 (체재비) 의 자기부담과 경감제도 <특정입거자개호서비스비 (보충급부)>

- 시설 등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와 통소개호 (데이서비스) 나 단기입소 (쇼트스테이) 등 시설 등에 가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소요된 식비, 광열수비 등의 거주비 (체재비), 기타 일상생활비 등이 이용자 부담이 됩니다.
- 시설서비스나 단기입소서비스에 있어서 이들 부담액은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지만, 소득이 낮은 분의 경우 소득에 따라 식비·거주비 (체재비) 의 부담액이 경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단, 배우자가 주민세 과세자인 분이나 예저금 등의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분은 식비·거주비 (체재비) 의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 이용자 부담의 기준은 18 페이지 참조.

생계유지 곤란자에 대한 이용자 부담액 경감제도

- 구시정촌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이용자에게 개호서비스의 10% 부담과 식비, 시설의 거주비 등의 자기부담을 약 4분의 3으로 경감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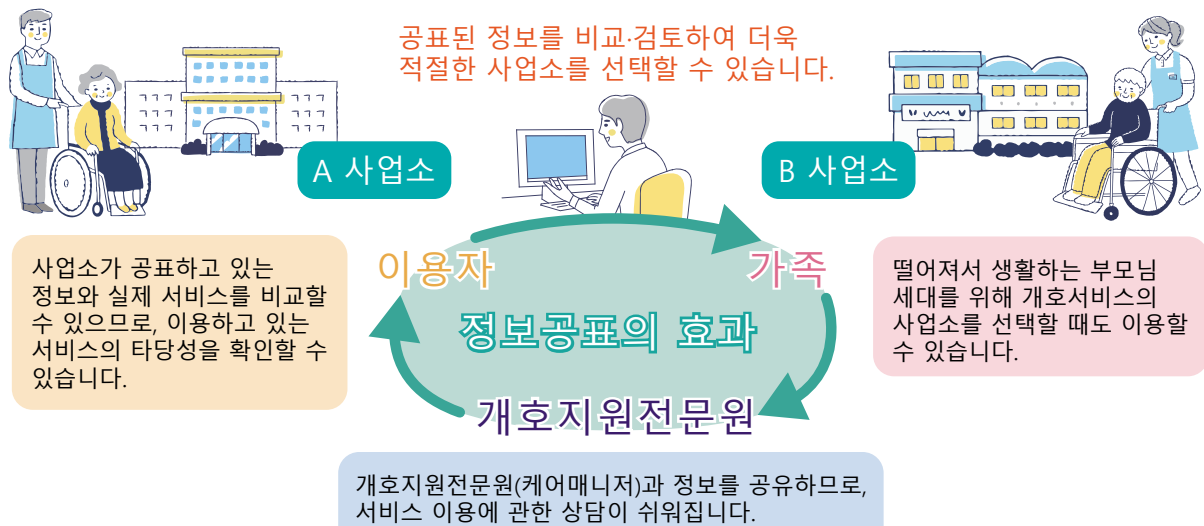
이용자 부담액의 각 경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구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개호서비스의 선택에 즈음하여

- 개호보험은 이용자가 사업자를 선택해서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어떤 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할지 망설여지는 분은, 먼저 거주지 구시정촌의 창구나 지역포괄지원 센터에 상담합니다.
- 이미 개호지원전문원(케어매니저)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개호지원전문원과 상담하면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개호서비스의 경우, 본인에게 적합하고 더욱 좋은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정보제공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호서비스 정보공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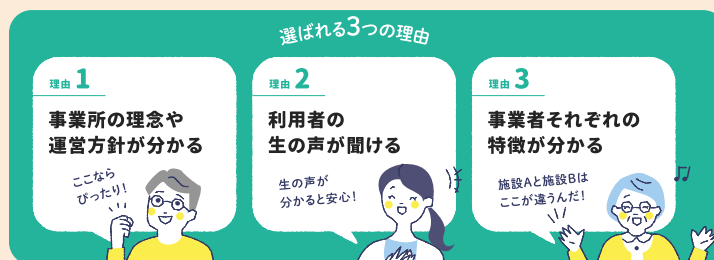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나 운영상황 등의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간단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제삼자 평가제도

평가에 필요한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하여 명부에 등재된 「평가자」가, 이용자의 의사와 만족도를 파악하는 이용자 조사와 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질, 조직 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 3 자 평가를 받은 사업장의 평가 결과를 본 도민의 90% 이상이 「사업소 선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개호서비스 정보공표제도와 복지서비스 제삼자 평가제도는 「도쿄 복지 내비게이션」 <http://www.fukunavi.or.jp>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개호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요개호 1~5로 인정받은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호급부)와 요지원 1·2로 인정받은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예방급부)가 있습니다.
- 예방급부는 개호예방 (생활기능을 유지·향상하여 요개호 상태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에 적합한 경증자전용의 내용·기간·방법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 가운데 지역밀착형 서비스는 생활에 익숙한 지역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사업소나 시설이 있는 구시정촌에 거주하는 분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역밀착형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는 다른 구시정촌에 있는 사업소나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케어플랜 작성

■ **거택개호지원 (요개호 인정을 받은 분)**
거택서비스 등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신의 상황·환경·본인의 희망 등을 바탕으로 거택개호지원사무소가 케어플랜을 작성하여 서비스제공사업자와 연락·조정 등을 시행합니다.

■ **개호예방지원 (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
요지원 상태의 악화 방지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용자의 자립에 도움이 되는 개호예방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케어플랜을 작성합니다.



※요개호나 요지원 모두 본인이 케어플랜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받는 서비스

■ 방문개호

요개호 인정을 받은 분의 이용

홈ヘルパー가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나 배설 등 일상생활상의 개호 및 조리나 세탁 등의 생활 지원을 시행합니다.

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의 이용

구시정촌이 시행하는 「개호예방·생활지원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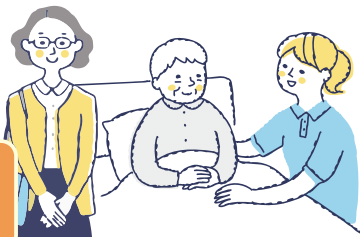
*표시의 서비스는 지역밀착형 서비스이므로, 기본적으로 사업소나 시설이 있는 구시정촌의 주민이 이용하게 됩니다.

■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홈헬퍼나 간호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순회하거나 연락이 닿은 가정을 방문하여 개호나 영양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야간에 홈헬퍼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순회하거나 연락이 닿은 가정을 방문하여 개호나 신변처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방문입욕개호

가정의 욕실에서 입욕하기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욕조를 가정에 반입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입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영양상의 돌봄서비스나 진료보조 등을 시행합니다.



■ 방문재활치료

이학요법사나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 기능의 유지·회복 및 일상생활의 자립을 위한 훈련을 시행합니다.



■ 거택요양관리지도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영양관리사 등이 통원이 곤란한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이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도 및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 등에 가서 받는 서비스

■ 통소개호, 지역밀착형 통소개호* (데이서비스)

요개호 인정을 받은 분의 이용

시설에 다니면서, 식사나 입욕 등 일상생활상의 지원이나 기능회복을 위한 훈련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합니다.

또, 구강 기능이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 난치병이나 암을 앓고 있는 요개호자 전용의 의료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도 있습니다.

※정원 19명 미만의 소규모 통소개호는 「지역밀착형 통소개호」로서 지역밀착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요개호 인정을 받은 분의 이용

구시정촌이 실시하는 「개호예방·생활지원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인지증 (치매) 대응형 통소개호 (데이서비스) *

시설에 다니면서, 가능한 한 거택에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지증 (치매) 고령자를 배려한 개호나 기능훈련을 받습니다.



■ 통소재활치료 (데이케어)

의료기관이나 노인보건시설 등을 다니면서, 심신 기능의 유지·회복과 일상생활의 자립을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또, 구강 기능이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도 있습니다.



■ 단기입소 생활개호
(복지계 쇼트스테이)

특별양호노인홈 등에 단기간 입소하여, 입욕·식사 등 일상생활상의 개호나 기능훈련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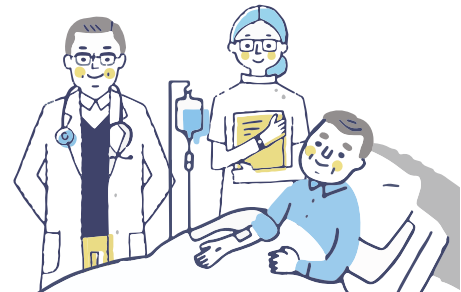
또, 연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단기입소 요양개호
(의료계 쇼트스테이)

의료기관이나 개호노인보건시설 등에 단기간 입소하여,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의학적 관리하에 요양상의 돌봄이나 일상생활상의 개호, 기능훈련을 받습니다.

또, 연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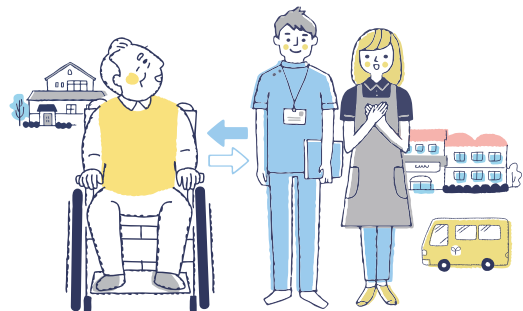
■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업소에서 주로 통소하면서 식사와 입욕,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또, 이용자의 상태나 희망에 따라 같은 사업소가 숙박이나 수시 방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요개호도가 높아져도 재택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와 방문간호를 조합한 서비스로, 같은 사업소가 「통소」「숙박」「방문간호」「방문개호」 등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요구가 높은 이용자도 재택 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 등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

■ 개호노인복지시설

(특별양호노인홈)

상시개호가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분이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식사나 배설 등 일상생활상의 개호와 신변처리의 돌봄서비스를 받습니다.

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

(특별양호노인홈)

상시개호가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분이 입소하는 정원 30명 미만의 소규모 특별양호노인홈입니다. 식사나 배설 등 일상생활상의 개호와 신변처리의 돌봄서비스를 받습니다.



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개호노인보건시설

병세가 안정되어 병원에서 퇴원한 분 등이 재택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 케어와 개호를 받는 시설입니다.



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개호의료원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입소하여 일상적인 의학관리 및 간호·터미널케어 등의 서비스와 일상 생활상의 돌봄서비스를 받습니다.



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표시의 서비스는 지역밀착형 서비스이므로, 기본적으로 사업소나 시설이 있는 구시정촌의 주민이 이용하게 됩니다.

■ 인지증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개호*

(인지증 (치매) 고령자그룹홈)

인지증 (치매) 고령자가 5~9명의 소수 인원
으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호나
신변처리의 돌봄서비스를 받습니다.



요지원 1 인정을 받은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개월당 이용자 부담의 기준 (개호노인복지시설)

시설 종별 등		이용자 부담 단계 ^(주 1)	개호서비스비 ^(주 2) (특별구·10% 부담의 경우)	식비	거주비	합계
유닛형 개호노인 복지시설 (유닛형 특별양 호노인홈)	유닛형 개인실	제1단계	15,000	9,000	26,400	50,400
		제 2 단계	15,000	11,700	26,400	53,100
		제 3 단계①	21,900 ~ 24,600	19,500	41,100	82,500 ~ 85,200
		제 3 단계②	21,900 ~ 24,600	40,800	41,100	103,800~106,500
		제 4 단계	21,900 ~ 31,200	(주 4)	(주 4)	—
개호노인복지시설 (특별양호노인홈)	종래형 개인실	제1단계	15,000	9,000	11,400	35,400
		제 2 단계	15,000	11,700	14,400	41,100
		제 3 단계①	19,300 ~ 24,600	19,500	26,400	65,200 ~ 70,500
		제 3 단계②	19,300 ~ 24,600	40,800	26,400	86,500 ~ 91,800
		제 4 단계	19,300 ~ 28,500	(주 4)	(주 4)	—
	다인실 (합숙실)	제1단계	15,000	9,000	0	24,000
		제 2 단계	15,000	11,700	12,900	39,600
		제 3 단계①	19,300 ~ 24,600	19,500	12,900	51,700 ~ 57,000
		제 3 단계②	19,300 ~ 24,600	40,800	12,900	73,000 ~ 78,300
		제 4 단계	19,300 ~ 28,500	(주 4)	(주 4)	—

주 1: 표의「이용자 부담 단계」는 보험료 소득 단계와는 다릅니다.

주 2: 「개호서비스비」는 요개호도, 지역 및 소득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위 표는 특별구에 소재한 시설에서 10% 부담하는 분의 경우). 또한 심신의 상태나 시설의 체제 등에 따라 영양식 가산이나 치매전문케어 가산 등이 가산됩니다.

주 3: 제 1~ 제 3 단계의 개호서비스비·식비·거주비는 국가가 정한 부담한도액의 초과분에 대한 「보충급부」 및 11 페이지의 「고액개호서비스비」 적용 후의 금액으로 이용자 부담의 상한액이 됩니다. 거주비는 2024 년 8 월 개 정 후의 부담 한도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 4: 이용자 부담 단계가 제 4 단계인 분의 식비·거주비는 모두 이용자와 시설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 5: 칫솔이나 화장품 등의 일용품과 독감예방접종, 기호품 등도 자기부담이 되며, 모두 이용자와 시설 간의 계약 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 등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

■ 특정시설입거자 생활개호

개호보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유료 노인홈이나 저비용 노인홈 등에서 생활하면서 개호를 받습니다. 또, 시설 외의 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외부서비스 이용형 특정시설」도 있습니다.



■ 지역밀착형 특정시설입거자 생활개호*

개호보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소규모 유료노인홈이나 저비용노인홈 등 (정원 30명 미만) 에서 개호를 받습니다. 또, 지역밀착형 특정시설의 입주자는 요개호 인정을 받은 분과 그 배우자 등으로 한정되며 (개호전용형 특정시설),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요개호 인정을 받은 분에 한정됩니다.

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밀착형 서비스란 ?〉

생활에 익숙한 지역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 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업소나 시설이 있는 구시정촌의 주민이 이용하게 됩니다.
- 나. 구시정촌이 사업소나 시설에 대한 지정·지도 등을 시행합니다.
- 다. 구시정촌이 지역의 실정에 따라 개호보수를 설정합니다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에 한정).
- 라. 지역주민 등이 지정 (거부) 이나 지정 기준·보수의 설정에 관여하는 공평하고 공정·투명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

■ 복지용구 대여

요개호 2~5 인정을 받은 분의 이용

개호용 침대나 휠체어, 욕창 방지 용구 등 재택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구를 빌릴 수 있습니다.

요개호 1·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의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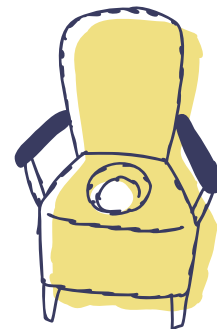
생활기능의 유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복지용구(복지용구 대여 중 난간, 슬로프, 보행기, 보행보조 지팡이, 자동배설처리장치(소변만 자동으로 흡입하는 장치))에 한정하여 빌릴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구매비의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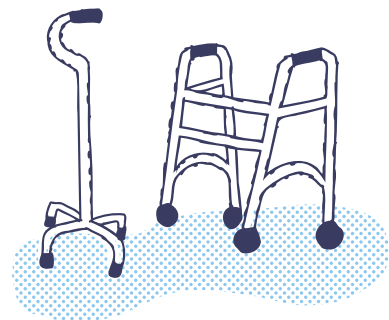
기립 보조 좌변기나 입욕용 의자 등 대여받기 힘든 복지용구를 지정받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 그 비용이 지급됩니다.

이용자가 일단 전액을 지급한 후, 부담비율에 따라 지급한 금액 일부가 개호보험에서 환급됩니다(지급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대여와 구매의 선택이 가능한 종목·종류

「고정용 슬로프」, 「보행기(보행차 제외)」, 「단발 지팡이(목발 제외)」, 「다발 지팡이」에 대해서는 위의 「복지용구 대여」 또는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개수비의 지급

난간의 설치나 단차의 해소 등 소규모 주택개수에 드는 비용이 지급됩니다.

이용자가 일단 전액을 지급한 후, 부담비율에 따라 지급한 금액 일부가 개호보험에서 환급됩니다(지급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주택개수를 하기 전에 구시정촌에 주택개수신청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지역지원사업

1 지역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은 고령자가 요개호(요지원) 상태로 되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요개호 상태가 된 경우에도 가능한 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구시정촌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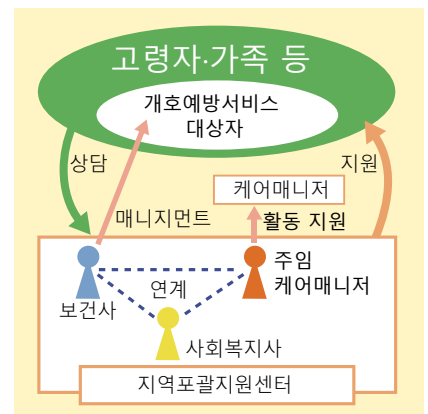
【지역지원사업의 사업내용】

① 개호예방·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	→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② 포괄적 지원사업 (지역포괄지원센터 운영)	→ 「2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참조하십시오.

2 지역포괄지원센터

고령자가 생활에 익숙한 지역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호보험서비스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복지의 전문직과 자원봉사자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통합된 포괄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구시정촌이 설치하는 지역포괄지원센터에는 주임 케어매니저, 보건사, 사회복지사 등의 직원이 배치되어, 그 전문지식과 기능을 서로 활용하면서 고령자와 그 가족 등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사업내용】

① 개호예방 등 케어매니지먼트	개호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본인의 의욕과 능력을 바탕으로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세웁니다.
② 종합상담·지원	지역 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고령자와 가족으로부터 상담을 받으며, 다양한 제도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③ 권리 옹호	고령자가 존엄을 지키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 옹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창구로서, 성년후견제도의 소개 및 고령자 학대의 조기 발견·방지, 소비자 피해 등에 대응합니다.
④ 포괄적·계속적 케어매니지먼트	고령자분께 심신의 상태와 그 변화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가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케어매니저에 대한 지원과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조정을 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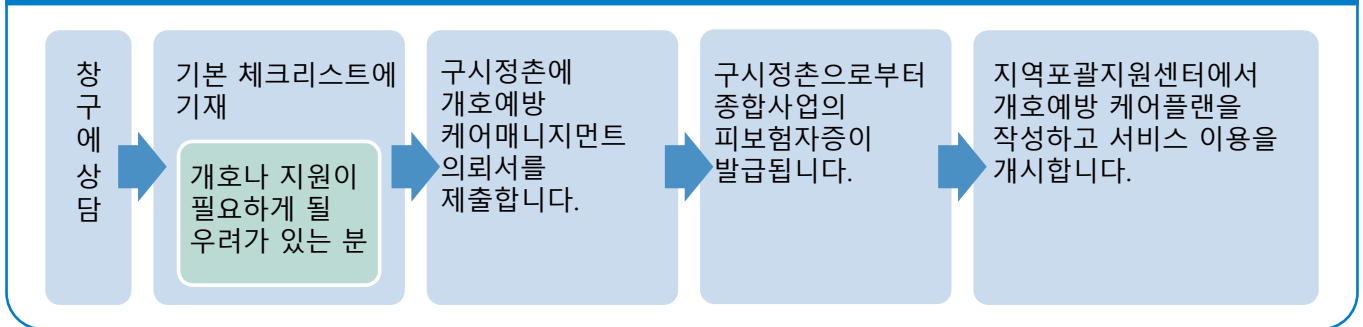
①은 지역포괄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구시정촌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개호예방·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

※이하「종합사업」이라 칭함

종합사업은 구시정촌별로 지역의 실정에 따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에 충실을 기함으로써, 지역 내 상부상조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함과 동시에, 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합니다.

이용까지의 흐름



종합사업의 사업내용

■ 개호예방·생활지원서비스사업

요지원자 등의 다양한 생활 지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호예방방문개호나 개호예방통소개호에 상당하는 서비스에 더하여, 주민이 주체가 된 지원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방문형 서비스

이전의 개호예방방문개호를 대신하는 서비스로, 홈헬퍼가 자택을 방문하여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한 지원을 시행하는 외에, NPO 나 주민이 주체가 된 조직이 다양한 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② 통소형 서비스

요지원자 등의 다양한 생활 지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호예방방문개호나 개호예방통소개호에 상당하는 서비스에 더하여, 주민이 주체가 된 지원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기타 생활지원서비스

식사 배달이나 돌봄서비스, 지역 살롱 개최 등 지역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일반개호예방사업 ※ 65 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쉼터나 지역 살롱 등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을 통해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① 개호예방보급개발사업

구시정촌이 개최하는 체조교실이나 강연회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개호예방의 보급개발을 위해 팸플릿 등을 배포합니다.

② 지역개호예방활동지원사업

쉼터나 살롱 등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개호예방 활동의 육성·지원을 시행합니다.

③ 지역재활치료활동지원사업

주민이 주체가 된 쉼터 등에 재활치료 전문직 등을 파견합니다. 등

상담창구

① 거주지의 구시정촌 또는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상담창구

② 도쿄도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

고충 상담창구 [개호서비스에 관한 고충 등]

☎ 03-6238-0177

③ 도쿄도의 상담창구

도쿄도 개호보험제도 상담창구 [개호보험제도 일반의 상담]

☎ 03-5320-4597

도쿄도 소비생활종합센터 [계약에 관한 상담 등]

일반상담

☎ 03-3235-1155

고령자 피해 110 번

☎ 03-3235-3366

고령 소비자 지킴이 핫라인

☎ 03-3235-1334

도쿄도 보건의료정보센터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제공 등]

☎ 03-5272-0303

④ 기타 상담창구

소비자 핫라인 [계약에 관한 상담 등]

☎ 188

※가까운 소비생활 상담창구를 안내

법 테라스 [법적 분쟁에 관한 상담]

☎ 0570-078374

IP 전화의 경우 ☎ 03-6745-5600

평일 9:00~21:00 토요일 9:00~17:00

(공휴일 · 연말연시는 제외)

⑤ 민간 상담창구 소개

개호에 관한 상담은 민간 상담 기관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용해 주십시오.
지면 관계로 일부만 소개합니다.

- **고령자안심전화** ((공사) 도쿄 사회복지사회) [보건 · 복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 상담]
☎ 03-5944-8640 19 : 30 ~ 22 : 00 [연중무휴]
- **인지증텔레폰상담** ((공사) 인지증 환자와 가족의 모임 도쿄도 지부) [개호가족 지원 , 정보제공]
☎ 03-5367-2339 10 : 00 ~ 15 : 00 [화 · 금요일 (경축일 · 연말연시는 제외)]
- **인지증 110 번** ((공재) 인지증예방협회) [인지증 예방 , 개호 상담]
☎ 0120-65-4874 10 : 00 ~ 15 : 00 [월 · 목요일 (공휴일 · 연말연시는 제외)]
- **권리옹호센터 파트너 도쿄** ((공사) 도쿄 사회복지사회) [성년후견제도 이용]
☎ 03-5944-8680 10 : 00 ~ 16 : 00 [월 · 수 · 금요일 (공휴일 · 연말연시는 제외)]
- **(공사) 성년후견센터 리걸 서포트 도쿄지부** [成年後見制度の利用]
☎ 03-5379-1888 14 : 00 ~ 17 : 00 [월 ~ 금요일 (공휴일 · 연말연시는 제외)]
- **(공사) 전국유료노인홈협회** [유료노인홈에 관한 정보제공 · 입거 상담]
☎ 03-3548-1077 10 : 00 ~ 17 : 00 [월 ~ 금요일 (공휴일 · 연말연시는 제외)]

발행 / 도쿄도 복지국 고령자 시책추진부 개호보험과

(우) 163-8001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 초메 8 번 1 호 도쿄도청 제 1 본청사 26 층 북측

TEL. 03-5320-4291 FAX. 03-5388-1395

복지국 홈페이지 <https://www.fukushi.metro.tokyo.lg.jp/>

2024 년 11 월 발행 (6) 72 인쇄 / 사회복지법인 도쿄 콜로니 도쿄도 오타복지공장

